

창업중점교수 운영세칙

(제정 2017. 3. 1.)

(제명변경 및 전부개정 2018. 11. 19.)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「창업지원단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창업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창업중점교수를 육성하여, 우수한 학생창업자 발굴 및 창업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명) ① 창업중점교수는 지정형 창업중점교수와 채용형 창업중점교수로 구분한다.

② 지정형 창업중점교수의 자격은 창업기업 보육 및 지원 또는 창업기업 경영 관련 경력이 7년 이상인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, 학장 등 소속 부서장의 추천과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채용형 창업중점교수의 자격은 창업 관련 직무 종사 경력이 7년 이상인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며, 임용절차는 「연구교수 임용세칙」에 따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창업관련 경력기준을 완화하여 임명할 수 있다.

1. 기업을 창업하여 연매출 10억원 이상을 달성한 경험이 있는 자
 2. 창업기업 투자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
 3.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투자자로 1억원 이상의 엔젤투자실적이 있는 자
 4. 세무사, 회계사, 변리사, 경영지도사 등 기업 경영지도를 위한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자
- 제3조(운영) 창업중점교원의 운영은 창업지원단이 한다.

제3조(운영) 창업중점교수는 창업지원 전담조직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창업지원단이 운영한다.

제4조(임기) 창업중점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임무) 창업중점교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창업기업 멘토링 및 애로기술 해결 지도 등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
2. 창업실무 중심형 강의 및 강좌 커리큘럼개발, 창업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 등 창업교육 및 연구 활동
3. 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학내 제도개선 등 창업인프라 구축
4. 학생 창업자 발굴 및 창업프로그램 참가 추천
5. 그 밖에 창업관련 활동

부 칙

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